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9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서울시 내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

장애학생의 권리 신장 및 차별을 해소하고자,

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인

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해당하는

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,

특수교육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

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,

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4조의 경우,

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특수교육대상자

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9조의3조의 경우,
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하여
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